

인천지방법원 2022. 10. 13 선고 2020가합1154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---

## 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음

담당변호사 김주형

5. F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논현

담당변호사 조철웅

변 론 종 결 2022. 8. 25.

판 결 선 고 2022. 10. 13.

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청 구 취 지

원고에게, 피고 B는 132,582,110원, 피고 C는 9,034,080원, 피고 D은 44,777,680원, 피고 E은 49,821,380원, 피고 F은 20,261,15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#### 가. 당사자의 지위

- 1) 원고는 인천 동구 G에 있는 H어린이집(이하 ‘이 사건 어린이집’이라 한다)의 대표자였던 사람이고, 피고 B는 2016. 8.경부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을 임차하여 원장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.
- 2) 피고 C, D, E, F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, 피고 B에게 위 보육교사 자격증을 빌려주어 실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육교사로 등록되었던 사람들이다.

#### 나. 이 사건의 경위

- 1) 피고 B는 2020. 2. 4. 인천지방법원에서 2016. 12.경부터 2019. 3. 7.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나 보육아동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90,000,000원의 보조금을 허위로 지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, 2020. 7. 17.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.
- 2) 피고 C, D, E은 2020. 2. 17. 피고 B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하고, 피고 B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되어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각 벌금

1,000,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,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3) 피고 F은 2020. 2. 19. 이 사건 어린이집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,000,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,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.

4)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은 2020. 3. 17. 원고에게 보육아동 및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하여 보조금 합계 95,271,610원을 부정수급하고, 영유아보육료, 긴급보육료 등 합계 66,982,5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, 위 보조금 및 부당이득 합계 162,254,110원을 환수한다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4 내지 8, 10, 14, 15, 20, 24, 26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27, 30, 31, 35, 36, 44, 48, 49, 5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## 2.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

### 가. 원고 청구의 요지

원고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어린이집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을 전적으로 맡겼는데, 피고 B는 피고 C, D, E, F과 공모하여 임의로 보육교사 및 보육아동을 허위로 등록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급받았고,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로서 피고들이 수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.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인건비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### 나. 판단

살피건대, 갑 제32 내지 34호증, 을가 제2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, 주식회사 I,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급받았다는 사정을 모두 알면서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따라서 이와 다른

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.

- (1) 이 사건 어린이집에 허위로 등록된 보육아동 중에는 원고의 손녀인 J도 있었는데, 원고의 딸 K는 2018. 10. 10. 위 J를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육아동으로 등록하고는 2018. 10.경부터 2019. 2.경까지 피고 B로부터 매월 300,000원을 지급받았다. 위 K는 2019. 12. 13.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.
- (2) 피고 B는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이 수사를 시작할 무렵인 2019. 6. 12. 및 2019. 6. 13.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였다. 그런데 원고는 위 전화통화 과정에서 피고 B가 ‘보육교사 1명(L)이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다.’라고 하자 ‘난 다 예상했어.’라고 하고, 피고 B가 ‘왜 구청에서 안하고 경찰서로 넘어간 거예요?’라고 하자 ‘구청에서 하기는 너무 크니까. 복잡하니까 경찰에 넘긴 거야. 내가 그래서 둘이 같이 구청에 가보자고 한 거야.’, 피고 B가 ‘원장님(원고)도 조사 받아야 되요.’라고 하니까 원고는 ‘당연하지. 나라고 피해가겠어?’라고 말하였고, ‘L은 당장 경찰서에 가게 하지 말고 시간을 좀 벌자.’라고 하는 등 수사에 대한 대응까지 함께 의논하기도 하였다.
- (3) 위와 같이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비록 원고가 피고 B 등과 함께 형사처벌까지 받지는 않았지만, 원고는 피고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인건비를 부정하게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 판사 정창근, 판사 정승진, 판사 박승균